

Vol. 1

2026.1.15

& Customs Trade News

HANJOO CERTIFIED CUSTOMS AGENCY



HANJOO

T. 02-2017-2212

F. 02-545-5392

W. <http://www.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안만복본부장 mbahn@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박주경본부장 jpark@hjcustoms.co.kr

통관사업3본부 장진명본부장 jmjang@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정혜지전임 hjeong1@hjcustoms.co.kr

CONTENTS

- I. 법령 개정사항
- II. 입안 예고
- III. 조세심판사례
-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I. 법령 개정사항

1. 「관세법」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관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사유를 신설하며,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화하는 한편, 상표권 침해 물품에 대한 단속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소액의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를 간소화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개발한 핵심광물 등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며, 탁송품 운송업자의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를 합리화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며, 마약류 등의 반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약류 등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 강화 (제 19 조)	- 종전에는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경우로서 수입신고인에게 과세가격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에만 화주와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입신고인에게 과세가격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사유 신설 (제 42 조의 2)	-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납세자가 사전심사 신청일부터 그 심사결과 통지일 전날까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사전심사 결과로 통지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부터 2 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액에서 감면하도록 함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적용 기한 연장 (제 89 조)	-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대상 물품 중 항공기의 제조·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 관세 면제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약품 관세 면제 (제 91 조)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 중 일정한 의약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

구분	내용
<p>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제 114 조)</p>	<p>- 세관공무원이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종전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15 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등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앞으로는 20 일 전에 사전통지 하도록 하되,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 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p>
<p>소액의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제 235 조의 2)</p>	<p>- 세관장은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격 이하의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허용 및 유치·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p>
<p>탁송품 운송업자의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 합리화 (제 254 조의 2)</p>	<p>- 탁송품 운송업자가 다른 자료 하역금 통관목록 또는 수입신고서에 적힌 물품수신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게 한 경우에 종전에는 탁송품 운송업자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직접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탁송품 운송업자가 실제 배송한 자료 하역금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p>
<p>마약류 등의 은닉이 의심되는 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 마련 (제 265 조)</p>	<p>- 세관공무원은 마약류 등 유해물품에 대한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행자 등의 휴대품 및 휴대품 소지 여부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검색 결과 여행자 등이 마약류 등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함</p>

(3) 시행일

2026.1.1

I. 법령 개정사항

2.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관세법」 제69조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기본세율보다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2025년 12월 31일로 조정관세의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13개 물품에 대해 종전과 동일한 세율로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정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	2026년 12월 31일
대상 물품	13개 품목	
	HS CODE	품명
	0301.92	실범장어(양식용은 제외한다)가 아닌 것
	0301.99	기타 돔(양식용은 제외한다) 및 기타 농어
	0303.59	냉동 콩치
	0303.67	냉동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
	0303.69	기타 냉동 명태
	0306.95	염장이나 염수장한 새우류
	0307.43	오징어
	0709.54	표고버섯
	0712.34	건조한 표고버섯
	1902.19	당면
	1904.90	찌거나 삶은 쌀
	2103.90	고추장 및 고추·마늘·양파·생강의 함량이 각각 20% 이상 또는 합이 40% 이상인 것
4412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중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	

(3) 시행일

2026.1.1

I. 법령 개정사항

3.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할당관세의 적용 물품 및 세율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에너지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기본 3%)을 2026년 상반기까지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0% 또는 2%)으로 인하하고, 하반기에는 세율 인하폭 1% 감소 예정 -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연중 0% 적용
식품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수수(가공용), 커피(생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 1년 연장 - 긴급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해바라기씨유, 냉동딸기, 코코아가루 등 1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6개월 연장
철강 및 자동차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니켈 괴 등 2개 부원료, 전기차 배터리용 알루미늄 합금 및 탄산리튬 등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적용 - 긴급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페로니켈 등 3개 부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1년 연장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촉매, 폐인쇄회로기판, 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 5개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적용

(3) 시행일

2026.1.1

I. 법령 개정사항

4.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프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1) 제정 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프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프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태국산 파티클보드의 덤프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프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대상 물품	HSK 제 4410.11.1000 호에 해당하는 물품 다만, 표면을 피복한 파티클보드는 제외한다.	
공급국	태국	
공급자별 덤프방지 관세율	공급자	덤프방지 관세율(%)
	1. 메트로 파티클(Metro Particle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3.03
	2. 메트로 인더스트리얼 파크(Metro Industrial Park Co.,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3.03
	3. 그린 리버 패널 트랑(Green River Panels Trang Thailand Co., Ltd.)과 그 관계사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3.67
	4. 바나차이 그룹(Vanachai Group)과 그 관계사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5.18
	5. 그 밖의 공급자*	14.28

* 제5호의 공급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5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프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급자의 덤프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3) 시행일

2025.12.5

I. 법령 개정사항

5. 「중국산 아이티온산나트륨(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1) 제정 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산 아이티온산나트륨(차아황산소다)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대상 물품	HSK 제 2831.10-1000 호에 해당하는 아이티온산나트륨(차아황산소다)	
공급국	중국	
공급자별 덤핑방지 관세율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1. 다음 각 목의 기업과 그 관계사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진허(Jinhe Sodium Hydrosulfite Factory Co., Ltd.) 나. 진하이(Yantai Jinhai Chemicals Co., Ltd.)	12.87
	2. 마오밍(Guangdi Maoming Chemical Co., Ltd.)과 그 관계사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3.97
	3. 그 밖의 공급자	33.97

* 제3호의 공급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3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3) 시행일

2025.12.17

I. 법령 개정사항

6.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 합리화 등 관세법 개정(26. 1. 1. 시행) 내용을 반영하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회피절차 마련 등 현행 관세조사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한 합리화 (제 28 조, 별지 제 4 호서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를 시작하기 15 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등을 사전통지하였으나 앞으로는 20 일 전에 사전통지 하도록 변경 -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 일 전에 사전통지 -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는 날에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서면 교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회피절차 마련 (제 32 조, 제 50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조사요원과 관세조사 처분검토회의 구성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절차 반영
관세조사 분야 명확화 (제 9 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법 제 37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 통보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조사 분야에서 제외

(3) 시행일

2026.1.1

I. 법령 개정사항

7.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WCO 제74차 HS 위원회에서 승인한 “HS 품목분류의견서” 개정 사항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HS 해설서 일부개정 (WCO 제 74 차, 제 75 차 HS 위원회 결정)	- WCO 위원회 결정에 따른 해설서 개정 사항 반영 - 제 2106.10 호의 소호 해설 신설, 제 2202 호의 과실 함량 최대 25% 신설, 제 2941 호의 항생물질 및 제 9505 호의 축제용품 해설서 개정 등
HS 해설서 오류사항 수정	- 오역·영문 번역수정 및 알기 쉬운 용어 사용 등
HS 품목분류의견서 (WCO 제 75 차 HS 위원회 결정)	- 조리된 닭고기 분말(제 0210.99 호), 껍질을 제거하고 열처리된 녹두(제 2005.51 호), 채두류로 만든 팽창스낵(제 2005.99 호), CPU 냉각 시스템(제 8473.30 호), 광선 치료기기(제 8543.70 호), 전자 혈압계(제 9018.19 호), 손목 착용 러닝워치(제 9102.12 호) 등 22 개 품목

(3) 시행일

2026.1.1

I. 법령 개정사항

8.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예방적 사전점검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변경 -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변경
기업 지원을 위한 예방적 사전점검 근거 규정 마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단계(시작품·시제품 포함) 물품도 사전심사 신청 가능 - '대미 수출물품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속처리' 등 통상현안 대응 위한 신속심사 확대

(3) 시행일

2026.1.2

I. 법령 개정사항

9.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 다른 정부기관 인증제도와외 상호인정을 위한 가점부여 등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국회 등의 AEO 업체 법령위반 시 제재조치 강화 요구에 대응하여 혜택 정지 사유 확대 및 취소 후 재신청 기간 등의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정부기관 인증제도간 상호인정 근거 신설 (제 4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와 국토부·해수부 우수물류기업 등 타 정부기관 제도가 인증한 업체에 대해 AEO 공인심사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 산업부 CP 기업은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내부통제 기준에 최대 2 점, 안전관리 기준에 최대 3 점을 부여, 국토부·해수부 우수물류기업은 우수물류기업 분야별로 차등을 두어 내부통제 기준에 최대 3 점을 부여
공인기준 평가 운영 관련 규정의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부문 명칭을 가이드라인과 일치하도록 수정 - 공인부문별 공인기준의 세부기준의 평가근거 마련 등 - 공인 및 갱신 서류심사 기간 통일 - 갱신심사 협력도 근거 조항 신설
통관적법성 심사 관련 규정 정비 (제 7 조, 제 9 조의 2, 제 19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훈령에 규정되어 있던 통관적법성 정보제공에 대한 업체의 60 일 이내 점검 및 조치 의무 규정을 고시로 상향 - 갱신심사 조문 등 여러 조문에 산재되어 있던 통관적법성 심사 관련 규정을 한데 모아 별도 규정으로 재정비 - 통관적법성 심사 장기화 등에 따른 갱신심사 지연을 해소하고자 업체의 공인 유효기간 종료 2 년 전 갱신심사 신청을 허용
관리책임자 자격 요건 규정 정비 (별표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책임자의 정의 및 자격요건 규정이 합치되지 않아 생기는 혼동의 여지를 방지하고, 수출입관 리책임자 자격 요건을 명확화

구분	내용
공인 및 갱신 서류심사 기간 통일 (제 19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 종합감사 지적사항 관련, 갱신 서류심사 기간을 기존 30 일에서 공인 서류심사 기간과 동일하게 60 일로 운영하도록 반영
AEO 업체의 법규위반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한 규정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요구에 따라 AEO 업체의 법규위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속 임직원의 관리 미흡과 관련한 혜택정지 사유 추가 - 공인 취소 후 2년이 경과해야 재신청 가능토록 규정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 정비 (별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EO 업체의 법규위반 시 엄정 제재 요구 등 국회 지적에 따라 과태료 경감 및 유사한 통고처분 감경 혜택 삭제 - 외국환검사 제외 혜택을 수입 부문에 한정하도록 명확화 - 수입자 부문 AEO 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제외 혜택 신설, 타 고시 등에서 규정되어 제공되고 있던 현행 혜택을 일괄 기재 - AA 등급 이상에게만 제공되던 보세화물 입출항 시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 특례, 보세창고 반입 정기지간 50% 범위 내 하향 조정 및 보세운송 정기점검 기간 완화 등 혜택을 A 등급에도 확대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 글로벌 쇼핑몰 입점판매사업 관련 타 부처 가점을 폐지함에 따라 혜택 삭제

(3) 시행일

2025.12.11

I. 법령 개정사항

10.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관세행정 투명성과 관세행정 법규준수 제고를 위하여 상이한 평가체계와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규준수 평가제도들을 통일된 체계로 통합하고, 수출입관련 이해당사자별 법규준수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할 수 있도록 법규준수도 평가항목, 점수산정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준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공개하고 관세협력도 평가대상 확대 및 관련 증빙자료 전산 제출 등 업체 신청에 의한 관세협력도 평가체계를 도입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행정규칙명 변경	-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업체별 평가대상 최소기준 신설 (제 4 조, 별표 1)	- 평가 실익과 점수 왜곡방지를 위해 수출입관련 이해당사자별 최소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예측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해 별표 1에 '업체별 평가대상 최소기준' 규정
세부평가사항 개편 (제 5 조, 별표 2)	- 타 유사 평가제도의 유용한 평가항목 수용, 최근 제도 신설·변경사항 반영 등을 통해 세부평가사항을 개편하고, 자율법규준수 제고를 위해 별표 2에 '평가대상별 세부평가사항' 규정
신고정확도의 정정항목 개편 (제 6 조, 별표 3)	- 수출입업체 등의 중요정정과 경미정정 항목을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별표 3과 일치시키는 등 정정항목 구분(중요, 경미)의 조정
점수산정 기준 변경 (제 6 조)	- 신고정확도 평가점수 만점 기준을 99 점에서 100 점으로 변경 - 특송업체 신고정확도 평가는 100 점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아닌 평가항목별 배점을 100 점 기준으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관세협력도 평가점수 최대 배점 확대
평가일 조정 (제 8 조, 제 11 조)	- 법규준수도 평가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체별 법규준수도 평가일(평가결과의 제공일)을 매 분기 다음 달 20 일에서 25 일로 조정

구분	내용
<p>수출입관련 이해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관세협력도 평가 신설 (제 8 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관세협력도 증빙자료를 매분기 마지막 달의 20일부터 말일까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제출
<p>AM 협력도, 특송협력도 평가 관련사항 신설 (제 2 조, 제 8 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 협력도, 특송협력도의 용어 정의 -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 확인에 의한 관세협력도 평가 근거 규정
<p>의견제출 제외대상 신설 (제 12 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하는 관세협력도 증빙 제출 건과 세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가 있는 특송협력도는 법규준수도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

(3) 시행일

2025.12.20

I. 법령 개정사항

11. 「통합공고」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여러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 신설·개정된 수출입 요건 및 절차 관련 내용을 통합공고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확대 - 신규화학물질 신고 업무 처리기관 변경(화학물질안전원 →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관리법」	- 유독물질 범주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 -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의 수입허가 대상확대 - 제한물질의 수입신고 신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시행규칙 조항 수정, 취급제한물질 정의 수정 (수은 → 수은 및 수은 화합물) -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비(B) 관련 취급금지 금지물품 조항 수정
「대기환경보전법」	-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시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수입·판매 하는 행위 등에 대한 조항 신설
「식물방역법」	- 관련 용어 정정, 검역증명서 첨부·전송 관련 예외조항 추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 기관 명칭 오기 및 국제기구 명칭 변경 -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의 수입허가 대상확대
「산업안전보건법」	-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관련 누락사항 추가 반영 - 법령 적용 물품 수입시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 조항 추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적용 법령 수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법령명칭 수정(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규칙 조항 수정, 법률 적용 품목 관련 수입요령 개정

구분	내용
「문화유산법」	- 법령명칭 수정(문화재보호법 →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에 따른 자연유산 및 천연기념물의 반출 관련 단서 신설
「석면안전관리법」	- 통합공고 적용 법률로 추가 반영
「통신비밀보호법」	- 통합공고 적용 법률로 추가 반영 - 국가기관이 아닌 자의 감청설비 수입에 대한 조항 신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적용 법률로 추가 반영 - 고위험병원체 반입 시 관련절차 및 필요서류 등에 대한 조항 신설 - 기타 관계 법령 및 조문의 명칭, 기관 명칭 등 자구 수정
별표 개정 내용	- 법령 적용 품목 수출입요령 개정(별표 1, 별표 2) - 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별표 개정(별표 5) - 수입 금지 식물, 금지 지역 및 금지 병해충 별표 개정(별표 10) -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 별표 개정(별표 16)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별표 개정(별표 20)

(3) 시행일

2025.12.24

I. 법령 개정사항

12.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서류제출 대상, 통관지 제한, 해체용 선박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신속 통관 및 국내 산업 지원하고, 납세의무자 검증 강화로 허위신고 행위를 차단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수입거래 유형 신설로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임시개정 신청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필수적 서류제출 제외대상 확대 (제 13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에서 재수입면세 대상인 전자상거래 물품 반품 시 여러 반품 건을 일괄 집하·재반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 P/L(Paperless) 신고대상을 확대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 감면심사에 필수 구비서류가 없고 수출내역이 전산으로 확인되어 심사 실익이 적은 물품을 서류제출 대상에서 제외
수입통관 시 첨부서류 전자제출 대상 확대 (제 15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법」제 38 조 제 2 항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첨부서류를 전자제출 대상으로 전환 및 기타 첨부서류 종이 매수와 상관없이 전자제출 원칙 허용
해체용 소형선박 수입통관 절차 개선 (제 83 조, 제 85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천톤 미만의 해체용 선박에 대해 해체작업 전 수입신고 수리 및 분리과세대상물품(원상태 사용 예정물품)의 수리 후 60일 이내 추가 신고를 허용하여 국내 선박 재활용 산업 지원
특정물품의 통관지제한 제외 신설 (제 106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수입신고 세관에서 수입물품을 수리전 분석한 결과 특정세관에서 통관해야 되는 특정물품으로 회보받은 경우 당초 세관에서 승인을 받고 수리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마련
납세의무자의 적정성 검증 강화 (별지 1-2 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상거래 관련 물품 수입신고 시 납세의무자 주소지 우편번호(5 자리) 필수 기재 명확화 - 외국인(개인)이 납세의무자 항목에 기재하는 외국인등록번호는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일원화하여 명의도용 등 불법행위 차단

(3) 시행일

2025.12.17

I. 법령 개정사항

13.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25.3월) 및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 본격 시행 ('26.1월)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내 보험중개사를 통한 재보험료 지급 등 그간 제약·불편이 있었던 일부 거래들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에 따른 인가 절차·요건 등 정비	- 대고객 외국환중개업자가 갖춰야 할 전산설비, 소비자 보호조치, 해외에서 수행할 수 있는 외국환중개업 범위 등 규율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통합에 따른 규정 정비	-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라 현행 업권별로 구분된 거주자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전업권 연간 10만불 한도로 통합 - 연간 10만불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소진한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을 통해 건당 5천불 이내 무증빙 해외송금 허용 - 거주자의 지급절차·신고의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확인의무 등 관련 규정 개정
보험중개사 통한 재보험료 지급시 제 3자 지급 신고 면제	- 국내 보험중개사가 국내 보험사를 대리하여 해외 재보험사와 재보험료 등을 지급·수령하는 거래에 대해 제 3자 지급 신고 면제
기타	- 국제통계와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해외직접투자 투자유형 구분 및 해외직접투자 보고체계 전산화

(3) 시행일

2026.1.1

I. 법령 개정사항

14.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1) 공고 이유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공고

(2) 주요 내용

구분	적용기한
액화 또는 가스 상태의 천연가스	2026년 3월 31일
계란, 알부민, 냉동 과실, 프로판 및 부탄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프로판 및 부탄 가스 등 32개 품목	2026년 6월 30일
커피, 감자전분, 코코아두, 식품용 전분 및 글루, 나프탄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등 29개 품목	2026년 12월 31일

(3) 시행일

2026.1.1

II. 입안예고

1.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제정안 행정 예고

(1) 제정 이유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9호(2025.9.23. 시행)로 2025.9.23.~2026.1.22.(4개월)의 기간 동안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나, 무역위원회의 조사 기간 연장, 공급자의 요청 등에 따라 잠정조치 기간의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부과기간을 2025.9.23.~2026.6.22.(9개월)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대상 물품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HSK 기준 38 개) 단,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① 열간압연 후판 제품[철이나 비합금강 및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flat-rolled products of iron, non-alloy steel or other alloy steel) 중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이고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이며, 코일모양이 아니고, 냉간 압연을 하지 않은 제품] ② 열간압연 제품에 클래드(clad, 두 가지 이상의 금속을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접합한 것), 도금(plated) 또는 도포(coated)한 제품 ③ 스테인리스강 제품(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chromium)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
공급국	일본, 중국
부과기간	(당초) 2025. 9. 23. ~ 2026. 1. 22. (4 개월) (변경) 2025. 9. 23. ~ 2026. 6. 22. (9 개월)

구분	내용	
일본 공급자별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공급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1. JFE Steel Corporation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3.57
	2. Nippon Steel Corporation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1.58
	3. 그 밖의 공급자	32.75
중국 공급자별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공급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1. Baoshan Iron & Steel Co., Ltd.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9.89
	2. Bengang Steel Plates Co., Ltd.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8.16
	3. Dalian Woo Ho Hongkong International Trading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3.10
	4. Sharpmax International Hongkong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3.10
	5. Sino Commodities International Pte.,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3.10
	6. 그 밖의 공급자	33.10

II. 입안예고

2.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제정안 행정 예고

(1) 제정 이유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8호(2025.9.19. 시행)로 2025.9.19.~2026.1.18.(4개월)의 기간동안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나, 무역위원회의 조사 기간 연장 등에 따라 잠정조치 기간의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부과기간을 2025.9.19.~2026.3.18.(6개월)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대상 물품	HSK 제 9001.10-000-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유리 소재인 모재를 고열로 녹여 생산한 원통형 유전체 도파관으로서, 코어·클래딩·아크릴 코팅층 등으로 구성되어, 국제전기 통신연합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에서 정의하는 G.652 단일모드 광섬유 A·B·C·D 와 G.657 굴곡강화 광섬유 A1·A2 의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Single Mode Optical Fiber) 다만, 광섬유 다발, 광섬유 케이블 및 G.652.D 중 Low Loss 제품은 제외한다.	
공급국	중국	
부과기간	(당초) 2025. 9. 19. ~ 2026. 1. 18. (4 개월) (변경) 2025. 9. 19. ~ 2026. 3. 18. (6 개월)	
공급자별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자	잠정덤핑방지관세율(%)
	1. Hengtong Optic-Electric Co., Ltd.	43.35%
	2. Yangtze Optical Fibre and Cable Joint Stock Limited Company	43.35%
	3. Hangzhou Jinxingtong Optical Fiber Technology Co., Ltd.	43.35%

II. 입안예고

3.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정부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개편방안」 발표(12.8일)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건당 송금한도를 제한하던 규제를 완화하고, 부담금관리법상 증가산금 요율 상한, 타 법률 등을 감안하여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증가산금 요율을 하향조정 하고자 함. 또한,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업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업무에 대한 검사·감독 및 제재에 대한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위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통합에 따른 규정 정비 (안 제 15 조의 3)	- 전업권 통합 무증빙 송금한도(年 10 만불) 도입에 따라 소액송금업자가 동 한도 내에서 건당 한도 제한없이 송금업무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외환건전성부담금 증가산금 요율 하향 (안 제 21 조의 8)	- 부담금관리법상 증가산금 요율 상한, 타 법률 등을 참고하여 외환건전성부담금 증가산금 요율을 일일 0.033% → 0.022%로 하향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정비 (안 제 37 조)	-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업무에 대한 검사·감독 및 제재에 대한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위탁

(3) 의견수렴기간

2025.12.15 ~ 2026.1.26

Ⅲ. 조세심판사례

1. 덤핑방지관세 부과시 분기별 최저수출가격 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1) 주요 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22.9.30. 해외수출자 A로부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이하 "쟁점물품")을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하면서 관련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상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덤핑방지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신고하여 이를 수리받았음
- 나.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하는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은 관련 규칙에서 정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품목이나, 쟁점수출자는 「관세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하여 쟁점고시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되었음
- 다. 쟁점수출자는 관련 고시에 따라 최저가격을 분기별로 산정하여 적용하고, 분기별 최저가격을 무역위원회에 보고하였음. 관련고시에 따른 최저수출가격은 2022년 3분기가 4분기보다 더 높게 설정되어 있었음.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4분기 수출물량이며, 4분기에 도착할 예정이므로 4분기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4분기 기준에는 부합하지만 3분기 기준에는 미달하는 가격으로 수입신고함
- 라. 처분청은 수입신고일인 2022.9.30.을 기준으로 3분기 최저가격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가격약속 위반으로 판단함. 이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2) 결정요지 : 신청인의 심판청구 기각

관련 고시상 최저수출가격 판단 시점은 '약속시행일 이후 수입신고일'로 명시되어 있으며, 「관세법」 제244조 제1항은 입항 전 수입신고된 물품은 신고일에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쟁점물품은 실제 도착일과 관계없이 신고일이 속한 2022년 3분기 최저수출가격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함. 또한, 관련 법령이 명확함에도 청구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3) 결정일

2025.12.1 (조심 2025관0048)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1. 비치 가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Toilet linen of man-made fibres; 폴리 비치가운; PL-14BG / 60*120
물품 설명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가장자리가 봉제된 직사각형의 파일직물로 중간에 구멍을 내고 머리를 덮을 수 있도록 후드형 모자를 재봉질하여 부착되어 있고 어깨에 걸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측면 가장자리에 프레스버튼(좌우 각 1 개)이 있어 잠글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크기 60*120 cm)
HS CODE	- 변경 전 : 제 6302.93-0000 호 (기본세율 13%) - 변경 후 : 제 6208.92-1000 호 (기본세율 13%)
변경 사유	- 비치가운은 목용용 가운과 유사한 의류에 해당하므로 제 6208.92-1000 호 분류 - (2025년 제 7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2) 시행일

2025.12.15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1.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 발표

- 2026년 기획재정부 관련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 발표
- 2026년 중점 추진과제는 한·미 관세협상 등 신(新) 통상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산업 지원'과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무역행위 엄단을 통한 '사회안전 수호'가 양대 축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12월 11일(목)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는 '미 관세협상 이행 등 신(新) 통상질서 대응을 위한 수출산업 지원'과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무역행위의 엄단을 통한 사회안전 수호'를 양대 축으로 구성되었다.

① 수출산업 지원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조치로서, 미국의 국가별 차등관세 부과체계 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특혜원산지 및 관세율 품목번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美) 관세당국의 사후검증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내년 초 미국 관세당국의 관세청장(Rodney Scott) 부임 이후 아시아 국가 최초로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한미 관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하여 우리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특혜원산지 관련 조치들을 시행 할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수출을 견인하는 국가 핵심산업과 케이(K)-뷰티·푸드 등 유망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관세·물류 규제 혁신방안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에 대비하여 유럽연합(EU) 측과 협력 채널도 강화하고, 자체 개발한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을 수출기업에 무료로 보급한다.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은 관세청이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 적용을 돕기 위해 보급한 원산지관리 시스템(FTA-PASS) 내에 구축되어 있어 활용 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관세청은 원산지관리시스템 해외보급 사업과 연계하여 '한국형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의 글로벌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 일상에서 불편화된 해외직구와 새로운 수출활로인 역직구에 대한 지원책도 실시한다. 직구물품의 통관·반품 편의를 위한 '전자상거래 통관플랫폼'을 구축·개통하고, 일본 역직구 수출 시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대(對) 일본 해상 간이통관제도' 등 역직구 종합지원대책도 시행한다.

② 사회안전 수호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국산 둔갑 우회수출,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무역안보 침해범죄에 대응하여 무역안보범죄 수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원재료 수급 장애 등 공급망 관련 충격에 적기 대응을 위한 공급망 위기조기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관세청은 초국가범죄의 자금고리를 끊기 위한 불법 외환거래 수사에도 더욱 힘을 예정이다. 수사 범위를 도박·보이스피싱 등 모든 초국가범죄 대상으로 확대하고,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출내역 분석, 우범여행자 대상 위조화폐 휴대 여부 단속 등 범죄자금 모니터링을 더욱 면밀히 실시한다.

국경단계 마약류 밀수 단속을 위해 마약 전과자·투약자 정보를 활용하여 정보분석을 고도화하고, 우범국발 화물에 대한 엑스레이(X-ray) 판독을 정교화한다. 캄보디아, 태국 등 주요 마약출발국과의 국제 수사공조를 통해 대한민국 마약 차단막을 해외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총기류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 차단을 위한 기관 간 공조도 더욱 강화한다.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사제 총기 제조 위험성에 대응하고, '데이터 기반 통합 국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들이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설계에 착수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026년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원년으로 삼겠다는 정부 슬로건 달성을 위해 관세행정의 최우선 목표를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안전'에 두고 업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관세청이 최후방 수비수리는 책임의식을 갖고, 인공지능(AI) 혁신을 통해 '물리적 한계를 초월한 빈틈없는 경제국경 수호'를 실현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2. 수입물품 가격신고 제도,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개선됩니다.

- 가격신고서 문항 및 서식 변경에 따라 신고 정확도 향상과 신고인 편의 증진 기대
- 단순 실수로 인한 잠정가격신고 누락 건에 대해 구제 방안 마련 ... 업체 불이익 예방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는 가격신고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과 보완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먼저, 가격신고 개정 서식을 12월 1일(월)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1일 시행된 ‘과세가격 신고자료(이하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다. 개정 서식에서는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신고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문항을 삭제하고, 실제 수입가격 결정방법을 선택하는 문항을 새로 반영하여 신고 정확도를 높인다.

아울러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존 수입신고 건의 신고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란도 신설된다. 동일 조건의 반복 거래라면 같은 과세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이, 기존 수입신고서 상의 신고인 기재란에 기재했던 수입신고 번호를 가격신고서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출이 같음된다.

한편 시행 4개월 차를 맞은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대상 업체 9,457개사 중 8,572개사가 과세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어 참여율이 현재 약 91%에 이른다. 이에 따라 수입 물품의 계약서 뿐만 아니라 권리사용료 지급내역 등 다양한 과세자료가 통관단계에서 확보되고 있다.

또한 관세청은 단순 실수로 잠정가격신고를 누락한 업체가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잠정가격신고를 누락한 경우 사후 구제 방법이 없어 본 세금 외에 추후 확정된 가격으로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동일 물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잠정가격신고를 했던 신고인이 특정 건에 대해 잠정가격신고를 누락한 경우 등 단순 실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잠정가격신고를 허용하는 지침을 10월 30일(목)부터 시행하고 있다.

향후 가격신고 내용도 수리 이후에 수정(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가격신고제도의 발전과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확보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세액 위험을 조기 점검하여 업체의 신고 오류를 적기 치유하는 등 공정성장 기반 마련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3. 2026년 수입물품 과세자료 이렇게 준비하세요.

-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에 따른 자료 제출 지원을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 배포
- 제도 시행 후 수집된 실제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오류 및 우수사례 제공
- 내년 1분기 중 전국 순회 설명회를 통하여 업계 의견도 적극 수렴 예정

관세청은 '과세가격 신고자료(이하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에 따라 수입물품 가격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시 검토가 필요한 유의사항을 총정리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과세자료 제출 대상업체 및 신고대리인이 자료 준비과정에서 겪어온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출되는 과세자료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가격신고서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주요 오류와 우수 과세자료 제출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편집하여 수록하였다. 주요 사례는 제도 시행 이후 4개월간 제출된 약 70만 건의 신고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선별하였다.

또한 제출되는 과세자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를 명시하여 다양한 형태의 과세자료를 인정하는 기초를 유지하되, 자료 제출을 준비하는 업체(신고대리인)의 혼선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였다.

매년 최초 수입신고 건에 대해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2026년 새해 과세자료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신고대리인)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자료 준비 부담을 줄이고 신고 의무를 더욱 정확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관세청은 세관에 의한 업체별 과세자료 제출 점검도 해당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제출된 과세자료를 검토하여 세액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관세조사 대상에서 후순위로 배치하는 등 성실 제출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관세청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이 가능하다. 과세자료 제출 대상업체에는 소책자 형태로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내년 1분기 중에는 서울·부산 등 주요 본부세관에서 관련 업계 및 신고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실시하여,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업계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배포를 통해 가격신고의 신고 정확도가 크게 개선되는 한편 업체들의 과세자료 준비 부담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과세자료의 품질을 지속 향상시켜 향후 인공지능(AI)을 통한 관세행정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4.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마련 … 1월 1일부터 시행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 명확화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관세청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에 대한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담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분	내용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 35 조 제 2 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72 조 제 4 항
미발급 사유	1. 관세포탈 등의 사유로 고발되거나 통고처분 받은 경우
	2. 부정한 행위로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1)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과세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2) 관세조사 등 결과 통지에도 같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 반복 3)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였으나 보정·수정을 하지 않는 경우 4) 4) 가격신고시 수입거래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과세자료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 해당 서류 또는 과세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동안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 소모와 납세자의 혼란이 있어 왔다. 이번 지침은 미발급 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시 수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추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 사용된다. 이때, 수입신고 후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변경되어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변경되면 세관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관세포탈 행위 등 부가가치세법상 정하고 있는 미발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미발급되어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번 지침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는 '미발급 사유'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제출할 과세자료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관세조사 등에 의한 반복 오류에 대해서는 오류 유형 구분표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보정통지 미수정시 예외적 발급대상이 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정하고, 가격신고(과세자료)의 중대한 하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정하였다.

관세청은 이번 지침 마련을 위해 지난 12월 5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관세청 누리집과 전국 순회 설명회(부산 18일, 서울 19일)를 통해 수집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동일 오류 반복 행위에 대한 적용 기간은 직전 관세조사 등으로 한정하였다. 적용 범위의 경우, 세번(HS) 적용 오류는 '동일(유사) 물품'으로, 금융비용·수수료 등의 과세가격 누락 오류는 '동일 거래조건'으로 정하는 등 분야별 구분표를 마련해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아울러 동일 오류 반복에 대한 질의회신 및 불복 결정 사례 등을 지침에 예시로 추가하여 현장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가격신고(과세자료)의 중대한 하자에 대한 지침의 적용 시점을 올해 1월 1일 이후 가격신고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동 지침이 마련되기 전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4호의 중대한 하자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허위신고와 같은 명백한 위반행위가 아닌 해당 지침을 통해 판단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침 시행일 가격신고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납세자가 세관의 미발급 처분에 대해 직접 의견을 제시하거나 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 방안도 강화하였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지침은 그간 해석이 모호했던 발급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5. 마스크팩·올인원 화장품, 어떻게 분류될까? 「케이(K)-뷰티 화장품 품목분류(HS) 가이드북」에서 알아보세요.

- 화장품 완제품·부자재·원료물질별 품목분류 가이드 및 오류사례 제공
- 해외 관세 추징 예방 및 통관 지연 해소로 케이(K)-뷰티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떠오르는 주요 수출 산업인 화장품의 품목분류(국제품목번호, HS) 해석을 체계화하고, 수출입 과정에서 관세 위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케이(K)-뷰티 화장품 품목분류(HS) 가이드북」을 12월 31일(수)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화장품은 성분과 용도에 따라 국가별 관세율과 수입 요건이 달라, 정확한 품목분류가 안정적인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번 가이드북은 수출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업들이 수출입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품목들의 명확한 판정 기준을 제공하는 등 실용성에 방점을 뒀다.

가이드북 내용을 살펴보면, 화장품 완제품 유형별 품목(87개), 부자재 및 미용도구(33개), 원료물질(782개)의 국제품목번호를 명확히 제시하였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사례(50개)를 수록해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소비자에게는 익숙하지만 품목분류 기준이 까다로운 제품의 분류 사례를 다수 수록하여, 수출입 실무자의 이해를 높였다. 예를 들어, 시트 형태의 마스크팩은 제3304호(기초화장품)가 아닌 제3307호(기타화장품)에 분류되고 있으며, 피부와 모발을 동시에 세정할 수 있는 제품(올인원)은 제3401호(피부세척용 제품)가 아닌 제3305호(두발용 제품류)에 분류되고 있다.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6. 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美 관세 인하 확정

- 자동차·부품, 목재 제품 관세 15%, 항공기·부품은 무관세
-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는 11월 1일자, 목재 제품·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는 11.14일자로 소급하여 적용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미 현지시간 12월 3일 한미간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현지시간 12월 4일 공식 게재 예정)

동 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하여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도 25%)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로 적용된다.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및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11월 14일자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8월 7일부터 미국의 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하여 15%가 추가되어 부과되고 있었으나, 11월 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되어 적용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 상호관세 대상 품목에 대한 관세율 >

시나리오	美 MFN 관세율	한미 FTA 특혜관세	총 관세
1	15% 미만	(충족여부 무관)	15%
2	15% 이상	충족	15%
3		미충족	해당 MFN 관세율

목재 제품은 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현재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가 최대 50%(주방 수납장 및 화장대 등)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한미 관세합의에 따라 관세가 15%로 인하된다. 다만, 동 232조에 따라 전세계 대상 1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던 목재(원목, 제재목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10%의 관세가 유지된다. 또한,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및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232조 관세가 철폐되어 한미 FTA 충족시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도 이날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적용을 위한 수정된 HS 코드(HTSUS), 수입 신고 변경사항 및 관세 정정 절차에 대한 가이드스를 발표하였으며, 우리 수출 기업들은 동 가이드스를 참고하여 수정된 HS 코드로 신고하여 통관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지난 2월부터 관세대응 통합 상담창구인 “관세대응 119”를 통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한 1:1 상담 및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관세 인하 관련한 상담도 가능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의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되어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언급하며,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통관 등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관세 대응 컨설팅, 관세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7. 조미김·고춧가루·인스턴트커피 등 대미 수출 식품, 상호관세 면제

- 관세청, 농축산품 위주 상호관세 제외품목 및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항공기 등 관세면제 품목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관세청은 최근 미국 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 면제 품목에 대해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작하여 12월 24일(수)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다.

먼저, 미국 측이 농축산품 등 248개 품목(미국 품목번호(HS코드) 기준)을 상호관세 제외 품목으로 추가(11월13일 시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계표를 마련했다. 연계 결과 조미김·고춧가루·녹차·인스턴트커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케이(K)-푸드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로 미국 측이 특정 항공기 및 부품 등 548개 품목(미국 품목번호(HS코드) 기준)에 대해 관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연계표도 함께 공개했다. 이들 품목은 11월 14일부터 소급하여 상호관세와 함께 철강·알루미늄·구리 관련 품목관세도 면제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며, 현재 운영 중인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042-714-7538),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기업들이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8. 멕시코, 비FTA체결국 대상 관세 인상안 상하원 통과

- 멕시코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일반수출입세법(LIGIE) 개정안이 12월 10일 (현지시간) 상·하원에서 순차 통과됨
- 멕시코 국내 산업 및 일자리 보호, 무역적자 해소 목적이나 일각에서는 2026년 USMCA 재검토에 대비한 대중 견제 조치라는 분석

멕시코 대통령은 품목별 관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일반수출입세법(LIGIE)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관세 인상 대상은 신발, 섬유, 의류, 철강, 자동차 등 멕시코 정부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한 17개 분야의 1,463개 품목이다. 관세율은 완성차 50%, 철강·철강제품 20~50%, 전기·전자기기 10~35% 등 품목에 따라 5~50% 관세 부과 예정이며, 적용 대상국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아랍에미리트(UAE),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이 포함됐다.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다수는 부품 수입 후 현지 생산 및 수출하는 구조로서 PROSEC, IMMEX, Regla 8 등 멕시코 정부의 관세감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제도 유지 여부가 가장 큰 변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제도 유지 시 단기적으로 직접적 영향 적을 수 있으나, 관련 동향 지속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멕시코 정부의 관세감면 제도>

구분	제도 개요
PROSEC	멕시코 정부가 지정한 전기·전자, 철강 등 24개 산업군에서 생산에 투입되는 기계, 장비, 부품, 소재 등에 특혜 관세(감세·면세)를 적용
IMMEX	수출용 상품제조 목적으로 자재·설비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 납부 유예
Regla 8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량이 부족한 원자재·자원 수입할 경우 관세 면제해주는 제도. PROSEC·IMMEX 인가 업체가 대상이 됨

관세 인상 품목에 대해 바이어와 관세 부담 조율, 원부자재 현지 조달 등 공급망 점검 및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 글로벌 OEM 기업은 멕시코와 FTA 체결한 국가에서 부품 조달하는 우회 공급 검토 움직임도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IMMEX·PROSEC 활용 확대, 현지 합작 생산 검토 등 북미 공급망 편입을 위한 현지화 전략 고도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9. EU 집행위원회, CBAM 강화 규정(안) 발표

- EU 집행위는 다운스트림 품목 적용 확대, 우회 방지 등 CBAM 강화규정안 발표(12.17)
- 해당 품목은 자동차 문, 세탁기 등 철강·알루미늄 다운스트림 품목 총 180개
- 향후 유럽의회·EU 이사회 승인을 거쳐 '28.1월부터 적용 예정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2월 17일, 기존 6대 전략 품목을 넘어 철강 및 알루미늄 다운스트림 산업 내 180개 품목(CN 코드 기준)에 대해 CBAM을 확대 적용하는 강화안을 발표했다.

이번 확대는 EU 탄소배출권거래제(EU-ETS)의 단계적 무상할당 폐지로 인해 국내 생산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기업들이 규제가 느슨한 역외 지역으로 생산 시설을 옮기는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주요 대상으로 중장비, 자동차 문, 실린더, 기계 등 산업용 제품이 전체의 94%를 차지하며, 세탁기 및 주방기기 등 일부 가전제품(6%)도 포함됐다. 추가된 품목의 수입 가치는 기존 CBAM 대상의 53%에 달하며, 집행위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기존 예상 수익 대비 20~25%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상 품목은 무역 집약도(거래 건수·가격·물량), 비용 상승 압력(탄소 비용 부과에 따라 제품 가격이 상승하는 정도), 기후 관련성,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실제값, 기본값 중 선택해 내재 배출량을 산정해야 하나, 투입된 전구체의 내재 배출량만을 산정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다수 부품이 투입되는 복합재의 경우, 실제 배출량 산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본값 사용 시 마크업(mark-up)은 미적용한다.

규정 회피를 막기 위한 행정적 조치도 대폭 강화된다. 집행위는 부정행위 의심 시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강제하고, 미제출 시 수출국별 생산 공정을 반영한 '기본값(Default Value)' 적용을 강행할 방침이다.

특히 제품 구성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CN 코드를 세분화하고, 기존에는 제외되었던 철·알루미늄 스크랩이 전구체로 사용될 경우 이를 내재 배출량 산정에 포함하기로 했다. 단, 사후 소비 스크랩(Post-consumer scrap)은 탄소 감축 유도를 위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U는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역내 생산자의 타격을 줄이기 위해 '임시 탈탄소화 기금(Temporary Decarbonization Fund)'을 설립한다. 기금의 25%는 CBAM 인증서 판매 수익으로 충당하며, 2028년부터 2년간 탄소 누출 취약 기업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강화안은 202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026년 1분기 중 세부 규칙을 담은 시행령이 마련된다. 현재는 집행위의 제안 단계로, 향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유럽 내에서도 산업별 이해관계에 따라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유럽철강협회(EUROFER)와 독일철강협회(WV Stahl)는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수출 철강에 대한 무상할당 유지 등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와 독일기계설비공업협회(VDMA) 등은 공급망 비용 상승과 행정 부담 가중을 우려하며, 중소기업을 배려한 점진적인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